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36호 2020. 2. 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562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

규 칙

제127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7

고 시

제2020-15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60

제2020-17호 도로명주소 고시 61

공 고

제2020-166호 보상계획공고문 63

제2020-168호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68

제2020-179호 토석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72

제2020-180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73

제2020-18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74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2월 5일

거창군 조례 제2562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외(이하 “군외”라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관내 신설·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를」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경상남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이내
 2. 융자금: 최대 50억원 이내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관내에서만 이전일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과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관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26조(민원처리 특례 등) 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따른다.

제2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법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2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조금의 신청 등

제3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하고, 용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눠 상환한다.

② 그 밖에 용자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나. 관련조문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이전 지원),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6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제17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18조(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제22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제31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245	300	300	300	300	1,44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개별입주기업 지원 : 2개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45백만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4
----------	--------

제출일자	2019. 12. 2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상한을 조례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 거창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체계 변경 : 제6장 제28조 ⇒ 제5장 제39조

나. 규칙에 규정된 투자유치위원회 사항 조례로 통합(안 제3조~제10조)

1) 해촉, 제척·기피·회피, 운영, 간사 및 회의록, 의견청취, 운영세칙 신설
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안 제15조~제16조)

1) 500억원 이상 15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도비 포함)

2) 추가지원 : 30억원 이내 추가 지원

라.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안 제17조)

1)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50억원 이내 지원(도비 포함)

마. 소규모기업 지원(안 제18조)

1) 지원기준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토록 하여 탄력적 운영

바.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안 제19조)

1) 300억원 이상 30명 이상, 투자금액의 3퍼센트 이내 60억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제9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나. 예산 조치 : 2020년도 예산 16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2. 4.~12.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2월 5일

거창군 규칙 제127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시설투자금액을 말한다.
2. “시설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를」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4조의 입지보조금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군비”라 한다)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제4조의 입지보조금을 군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만, 제4조 입지보조금을 군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사후관리기간”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나. 제조업 이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여성대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이 군에 투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할 것

2. 10명 초과 교육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2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3.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시설투자금액일 것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시설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2. 기업당 2억원까지
3. 시설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 기준상의 유형자산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것
2.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기업당 2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의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의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시설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억원 (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 기준·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12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연구소가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도비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소는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4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20명)이상 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도외기업 및 도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시설투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 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고용인원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또는 관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신규로 고용한 인원으로 산정
 2.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전체 상시고용인원에서 20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산정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군수와 협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사업 부지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3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대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도비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서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지원 기준 준용)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22조(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

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야 설치하는 경우로 함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것
3. 용자대상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용자 한도액은 부지매입비의 60퍼센트 이내, 최고 50억원 이내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 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일컫는다) 평가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용자금의 상환)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용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용자금 지원일로 한다.

③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

제25조(보조금 지원결정 및 보전조치)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담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확약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이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연도의 횟수가 3회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관련 자문
2. 투자기업의 발굴
3.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종전 규칙에 따른다.

[별표 1]

시설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8조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구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 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임대 비용 등은 불인정
근로환경 개선 시설 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

-시설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명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0조, 제13조 관련)

1. 도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제10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퍼센트
20명 이상 30명 미만	2퍼센트
30명 이상 40명 미만	3퍼센트
40명 이상 50명 미만	4퍼센트
50명 이상	5퍼센트

2.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제13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30명 이상 40명 미만	1퍼센트
40명 이상 50명 미만	2퍼센트
50명 이상 60명 미만	3퍼센트
70명 이상 80명 미만	4퍼센트
80명 이상	5퍼센트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5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억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퍼센트	18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퍼센트	3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퍼센트	42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퍼센트	60

1.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표 4]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제23조 관련)

① 최근 1년 이상~3년 미만 평균 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최근 3년 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다만,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연 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연 월							
상시고용인원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융자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④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⑤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시설투자금액	5억원당 1점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⑥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⑦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2명당 1점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제28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2. 보조금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한다)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9호)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4.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2호)
부분 환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관리기간 내 휴업·폐업(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2.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5조제1항제7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칙: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연평균 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begin{aligned} & \text{환수액} = \text{보조금} \times \text{연평균미달률} \\ & \text{연평균미달률} = \frac{\text{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5\text{년}} \\ & \text{미달률} = \frac{\text{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 \text{상시고용인원}}{\text{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end{aligned}$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만일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퍼센트로 계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원조건 요구 수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10명 (2)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150명 또는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 (3)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100명 (4)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20명(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명) (5)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20명(도외 및 도내 다른 시·군에서 이전한 기업은 예외) 2) <u>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u> 나. 예외: 다음 1), 2) 모두에 해당할 경우 미환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년 미만 2)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별표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투자금액×0.0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1,0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4	2,600만원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2,5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3	4,0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2	2억원

2.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투자금액×0.0002	200만원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04	350만원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35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03	5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02	2,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자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남/여)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지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시설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임차	
투자사업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거창군)
	토지매입(임차)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3년 이내) (착공~투자완료)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투자사업장		제곱미터	제곱미터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시설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 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와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자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시설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남: 여:)	명 (남: 여:)
신규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사업이행여부 평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환수 <input type="checkbox"/> 전액 환수		
	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일:

기업체명: _____ (인)

대 표 자: _____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모든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남/여)
설립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업 분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data-bbox="172 1133 788 124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72 1312 788 1420"></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72 1491 788 1599"></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72 1671 788 1778"></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72 1850 788 1957"></div>	

□ 투자 시설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연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제곱미터)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시설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시설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따로 붙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퍼센트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연구·개발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사무·영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생산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퍼센트)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연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퍼센트)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투자완료 후 5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퍼센트		영업이익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 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접·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관련 규정: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투자사업장(소재지)	
투자기간	~ (년)
총 투자규모	천원
- 입지 투자	천원
- 시설 투자	천원
고용계획(명)	명(남: 여:)
보조금 지원규모	천원
- OO 보조금	천원
- OO 보조금	천원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환수나 융자금의 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나 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한다)을 거창군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20__년 __월 __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명 (남: 여:)	도내 신규고용 인원 (명) (남: 여:)	기존 고용인원 (명) (남: 여:)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그 밖의 사항					
보조금 신청액		천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					

【별지 제7호서식】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팩스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투자계획
	합 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시설			
보조금 신청	건축공사 착수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유치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시설	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성별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퍼센트)	기여내용	확인
	(남/여)					(인)
	(남/여)					(인)
	(남/여)					(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6조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245	300	300	300	300	1,44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개별입주기업 지원 : 2개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45백만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106
----------	----------

제출일자	2019. 12. 24.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구체화 등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체계 변경 : 제23조 ⇒ 제5장 제31조

나.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안 제12조)

- 1) 1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 지원(도비포함)

다. 관내기업 지원(안 제17조)

- 1) 투자금액 5퍼센트 이내, 10억원 이내
- 2) 승강기업체 외에도 승강기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 지원 기준 규정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안 제20조)

- 1) 부지 분양가의 50퍼센트 이내(도비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3조
-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2020년도 예산 16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 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2. 4.~12.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

거창군 고시 제2020-15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5일

거 창 군 수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비둘기맨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11 (비둘기맨션)	비둘기맨션 관리주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서 재난발생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해당없음	
송화아파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31 (송화아파트)	송화아파트 관리주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서 재난발생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남광빌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54-14 (남광빌라)	남광빌라 관리주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서 재난발생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43-34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9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43-35	20090702	20200205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092-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남불1길 304-24	20090401	20200205	마을이 생길때까지 강남사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옛지명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112	20090401	20200205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9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429-48	20090401	20200205	모곡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행정구역명 동변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42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268	20090401	20200205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에 계획된 “가조 수월지구(소로2-188호선 등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합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보상조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9.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조 수월지구(소로2-188호선 등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L=466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8-3번지 등 46필지
- 다. 출입기간 : 2020. 2. 1.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8-3번지 등 46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개발담당) 및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2. 1.(토) ~ 2020. 2. 28.(금)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fax)055-940-3579】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팩스전송, 우편으로 제출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7.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가조 수월지구(소로2-188호선 등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② 사업장 위치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③ 사 업 자	거 창 군 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 의 신 청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 년 2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용 지 조 서 (1)

번호	소재지	지 번	공 부 상		편 입		소 유 자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1	가조면 수월리	488-4	도	1,203	도	9		거창군
2	"	488-5	전	374	전	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3	"	488-2	전	484	전	1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4	"	488-3	도	99	도	33		거창군
5	"	458-13	대	144	대	1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	박*혁
6	"	457-10	전	382	전	1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최*석
7	"	456-12	대	75	대	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최*석
8	"	1376	도	11,405	도	88		국(교통부)
9	"	458-6	전	382	전	323	서울 마포구 아현동 ****	김*순
10	"	457-9	전	26	전	2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	김*목외2인
11	"	457-11	전	184	전	1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	백*섭
12	"	457-8	도	153	도	61		경상남도
13	"	457-2	도	1,607	도	7		거창군
14	"	458-10	전	661	전	11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	이*선
15	"	458-9	도	51	도	31		경상남도
16	"	458-11	전	294	전	72	서울 마포구 아현동 ****	김*순
17	"	460-6	과	668	과	156	서울 마포구 아현동 ****	김*순
18	"	461	과	929	과	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	김*옥 외1인
19	"	486-4	전	2,271	전	145	1229	이*영
20	"	481-6	과	701	과	267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당*길 ****	정*탁 외4인
21	"	478	답	2,433	답	202	거창읍 중앙리 ****	최*탁 외1인
22	"	464-6	도	1,422	도	6		거창군
23	"	481-7	과	1,398	과	3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당*길 ****	정*탁외4인
24	"	1370-24	제	67	제	12		국(국토교통부)
25	"	1370-23	천	70	천	40		국(국토교통부)
26	"	466-1	천	185	천	35		이*조
소 계				27,668		2,389		

●거창군 공고 제2020 - 168호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송변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로확포장 L=821m B=6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송변리 일원
- 나. 물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7, FAX 055-940-3529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의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69,806	1,903					
1	남상면 대산리	1189-1	답	109	4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31	허영환			
2	“	1189-2	답	345	3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7	허태명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가곡길 196-2	허종상			
3	“	1189-3	답	1,831	152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강남로254-17, 에이동404호(상아맨션)	정영아			
4	“	1189-4	답	420	35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772 대경넥스빌104-701	오재우			
5	“	1189-5	답	1,561	62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772 대경넥스빌104-701	오재우			

6	남상면 대산리	1189-6	답	1,452	38	경상남도창원시정산구신사로106, 14동206호(사파동,대동아파트)	장지은			
7	“	1190-1	답	1,143	33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25-1 동원아파트106-307	유재진			
8	“	1190-2	답	1,447	41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925-1 동원아파트106-307	유재진			
9	“	1190-3	답	2,426	5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31	이경순			
10	“	1190-4	답	1,061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박경제			
11	“	1190-5	답	1,419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9	이종기			
12	“	1190-6	답	1,215	2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9	이종기			
13	“	1191-1	답	345	7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1-9 영덕빌라 2-201	박야무			
14	“	1191-2	답	1,658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기영			
15	“	1191-3	답	1,849	4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기영			
16	“	1191-4	답	1,890	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17	“	1191-5	답	2,000	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7	허정환			
18	“	1191-6	답	1,390	2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동렬			
19	“	1191-7	답	409	11	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362 동남아파트1동202호	류동열			
20	“	1244-1	답	1,603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1	“	1244-2	답	667	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2	“	1244-3	답	986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3	“	1244-4	답	1,026	25	대구수성구수성동1가73 삼우수성타운103-601	허준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 30-12	허대환			
24	“	1244-5	답	819	20	부산광역시동래구낙민동84-1 동래우성아파트101-912	김정락			
25	“	1244-6	답	512	11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10동106호	김평락			
26	“	1244-7	답	1,492	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093	김평락			
27	“	1244-8	답	1,364	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28	“	1244-9	답	582	1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29	“	1244-12	답	657	19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1118	박행자			
30	“	1244-13	답	1,121	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87-1	도명수			
31	“	1244-14	답	1,389	28	대구달서구파호동89 성서삼성명가타운218-306	표주영			

32	남상면 대산리	1244-15	답	614	1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95	정운석			
33	“	1244-16	답	1,396	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21 세류아파트 702호	이종래			
34	“	1244-17	답	594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2길 86-3	이종래			
35	“	1244-18	답	1,988	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67-3 현대아파트 103-1006	박영재			
36	“	1244-19	답	2,009	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37번길 52, 101동 302호(남산동, 럭키남산아파트)	표성수			
37	“	1244-20	답	2,033	5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09-16, 103동 1202호(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표병수			
38	“	1244-21	답	2,025	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39	남상면 송변리	406-1	답	1,777	48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95	이수향			
40	“	406-2	답	2,075	48	김해시 삼방동 220-4	신쌍우			
41	“	406-3	답	1,958	46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 12길 16(화정동)	신민우			
42	“	406-5	답	2,032	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 무지개아파트바-902	정범석			
43	“	406-6	답	2,000	5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85	정규정			
44	“	406-7	답	2,019	48	거창읍 중앙리 13 무지개아파트 바동 902호	손말순			
45	“	406-8	답	2,060	5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1길 225	김경호			
46	“	406-9	답	2,008	49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74번길 30(덕천동)	박윤재			
47	“	406-10	답	2,000	48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 207동 703호(남외동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김기덕			
48	“	406-11	답	2,019	5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 207동 703호(남외동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김기덕			
49	“	406-12	답	2,000	5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 207동 703호(남외동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김기덕			
50	“	406-13	답	1,011	37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60, 207동 703호(남외동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김기덕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품명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1	남상면 대산리	1244-21	관정 (소형)	1개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토지소유자)			
2	“	1244-21	창고 (철제)	3 × 1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토지소유자)			

공 고

□ 제 목 : 토석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51번지 등 5필지 내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합니다.

○ 토석채취허가 신청내용

신 청 지					신청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지 목	계	채취장	산물처 리장	진입로	관리사 무소	완충 구역	
계			226,074		95,304 (16,338)	93,700	(16,338)	0	0	15,976	
주상	내오	산151	102,744	임	36,100 (3,833)	36,100	(3,833)			6,818	
		산152	27,471	임	10,394 (10,394)	10,394	(10,394)			1,147	
		산162	52,066	임	7,516 (2,111)	7,516	(2,111)			2,260	
		산162-1	67,041	임	1,604					1,604	
		산162-2	55,140	임	39,690	39,690				4,147	

() 산물처리장 중복지정 면적 임.

○ 토석채취신청기간 : 2020. 1. ~ 2029. 4.30.

○ 채취용도 : 건축용,공예용,토목용,쇄골재용

○ 채 취 량 : 3,390,110㎡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주민의견 제시방법

- 토석채취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또는 주상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30.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0 - 180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일반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엽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31. ~ 2020. 2. 15.(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면허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3톤미만지게차	경남27-2007-00 **-**	어**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2길 **	이사감	2020.1.28.
기중기	경기20-2009-02 **-**	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	이사감	2020.1.28.
3톤미만지게차	경북12-2005-00 **-**	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3길 ***-*	수취인불명	2020.1.28.
3톤미만굴착기	경남27-2007-00 **-**	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	이사감	2020.1.28.
3톤미만지게차	경남27-2005-00 **-**	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	이사감	2020.1.29.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31.

거창군수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거 창 군 수

1. 사업지구의 명칭 : 2018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 강선대·고척지구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183필, 48,401.8m²
 - 가. 강선대지구 : 77필, 29,325.3m²
 - 나. 고척지구 : 106필, 19,076.5m²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0. 2. 3. ~ 2020. 2. 17. / 14일간
6. 공람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7.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붙임 지적확정조서 2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20 - 186호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거창군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로 확·포장
- 나. 명 칭 : 남상 송변(농어촌도로303호선)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9-1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821m, B=6m

5. 사업의 목적 : 기존 농도가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 확·포장 시행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9. 2. 5. ~ 2020. 2. 2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7, FAX 055-940-3529
-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69,806	1,903					
1	남상면 대산리	1189-1	답	109	4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31	허영환			
2	“	1189-2	답	345	3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7	허태명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가곡길 196-2	허종상			
3	“	1189-3	답	1,831	1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254-17, 에이동404호(상아맨션)	정영아			
4	“	1189-4	답	420	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772 대경넥스빌104-701	오재우			
5	“	1189-5	답	1,561	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772 대경넥스빌104-701	오재우			
6	남상면 대산리	1189-6	답	1,452	3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106, 14동206호(사파동, 대동아파트)	장지은			
7	“	1190-1	답	1,143	3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925-1 동원아파트106-307	유재진			
8	“	1190-2	답	1,447	4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925-1 동원아파트106-307	유재진			
9	“	1190-3	답	2,426	5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31	이경순			
10	“	1190-4	답	1,061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박경제			
11	“	1190-5	답	1,419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9	이종기			
12	“	1190-6	답	1,215	2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9	이종기			
13	“	1191-1	답	345	7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1-9 영덕빌라 2-201	박야무			
14	“	1191-2	답	1,658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기영			
15	“	1191-3	답	1,849	4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기영			
16	“	1191-4	답	1,890	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17	“	1191-5	답	2,000	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7	허정환			
18	“	1191-6	답	1,390	2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43	류동렬			
19	“	1191-7	답	409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362 동남아파트1동202호	류동열			
20	“	1244-1	답	1,603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1	“	1244-2	답	667	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2	“	1244-3	답	986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59	허경환			
23	“	1244-4	답	1,026	25	대구수성구수성동1가73	허준일			
						삼우수성타운103-601	허대환			
24	“	1244-5	답	819	20	부산광역시동래구낙민동84-1 동래우성아파트101-912	김정락			
25	“	1244-6	답	512	11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10동106호	김평락			
26	“	1244-7	답	1,492	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093	김평락			
27	“	1244-8	답	1,364	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28	“	1244-9	답	582	1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71	허외환			
29	“	1244-12	답	657	19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1118	박행자			
30	“	1244-13	답	1,121	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87-1	도명수			
31	“	1244-14	답	1,389	28	대구달서구파호동89 성서삼성명가타운218-306	표주영			
32	남상면 대산리	1244-15	답	614	1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95	정운석			
33	“	1244-16	답	1,396	28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김천리255-21 세류아파트702호	이종래			
34	“	1244-17	답	594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2길 86-3	이종래			
35	“	1244-18	답	1,988	39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367-3 현대아파트103-1006	박영재			
36	“	1244-19	답	2,009	41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로37번길52, 101동302호(남산동, 럭키남산아파트)	표성수			
37	“	1244-20	답	2,033	54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109-16, 103동1202호(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표병수			
38	“	1244-21	답	2,025	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39	남상면 송변리	406-1	답	1,777	48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95	이수향			
40	“	406-2	답	2,075	48	김해시 삼방동 220-4	신쌍우			
41	“	406-3	답	1,958	46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 12길 16(화정동)	신민우			
42	“	406-5	답	2,032	49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13 무지개아파트바-902	정범석			
43	“	406-6	답	2,000	5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85	정규정			
44	“	406-7	답	2,019	48	거창읍 중앙리 13 무지개아파트 바동 902호	손말순			
45	“	406-8	답	2,060	5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1길225	김경호			
46	“	406-9	답	2,008	49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74번길 30(덕천동)	박윤재			
47	“	406-10	답	2,000	48	울산광역시중구남외로60,207동 703호(남외동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	김기덕			

48	“	406-11	답	2,019	50	울산광역시중구남외로60,207동 703호(남외동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	김기덕			
49	“	406-12	답	2,000	53	울산광역시중구남외로60,207동 703호(남외동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	김기덕			
50	“	406-13	답	1,011	37	울산광역시중구남외로60,207동 703호(남외동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	김기덕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품명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1	남상면 대산리	1244-21	관정 (소형)	1개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토지소유자)			
2	“	1244-21	창고 (철제)	3 × 1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46	유식재 (토지소유자)			

2020년 거창창포원 관리 근로자 모집 공고

2020년 거창창포원 관리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사업명	구분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거창창포원 관리근로자	합계	25	
	여자	22	창포재배지 식재 및 제조작업, 공원구역 환경정비 등
	남자	3	양수장비 조작, 습지·수로 정비, 수목전지·전정

2. 근 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0. 3월 ~ 10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 1일 68,720원('20년 최저시급, 시간당 8,590원)
※ 기계장비(예초기 등) 운용에 따른 기술수당 5,000원/일 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하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근무지 : 거창군 남상면 거창창포원 일원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참여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 14.(금) / 3일간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남상면 창포원길 21-1 거창창포원 행정실
※ 신청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동의서 미 제출시 :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마. 국민연금지급 내역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1부.

-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 사. 농지원부 1부(창포원 조성지 편입 경작자의 경우)

※ 창포원 편입토지 경작자에 한해 가점(10점) 부여

- 아. 채용 신체검사서 1부.(채용 예정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6.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 가. 제1차 평가 : 서류심사
 - 나. 제2차 평가 : 면접심사
 - 면접일시 : 2020. 2. 19.(수). 오후 2시 예정, 개별통보
 - 면접장소 : 거창창포원 행정실
 -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이하 일 경우 면접심사 생략
 - 다. 제3차 종합평가 및 선발
 - 채용예정자 신체검사서 제출 : 검사결과 합격여부 판단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2. 25.(화) 예정,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시설담당(☎055-940-8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거창창포원 관리 근로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2.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 력 사 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 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참여 희망사업	거창창포원 관리근로자 참여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① 본 신청서는 거창창포원 관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거창창포원 관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연금지급 내역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면서 1부, 농지원부(창포원 조성지 편입 경작자의 경우) 1부.

2020년 2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0년 2월 일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0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를 통한 업무 공정성 제고
- 나. 신속한 답변을 통한 민원인들과의 소통 증진 도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근거를 둠(안 제2조)
- 나.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안 별표)
 - 2)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 3)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
- 다. 위원회 구성직무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16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02. 07. ~ 2020. 02. 27.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2) 전화번호 : 055)940-3384, FAX : 055)940-3349

3) 전자우편 : ch6540@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과 제출서류(제3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제1호	차량 도난	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 1 호	범죄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제 2 호	도로 공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포 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 우 등	관련 공문서 등
		교통 지도		
	제 3 호	응급 환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다만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의견진술서, 응급진료 확인서 등
	제 4 호	구난 작업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제 5 호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의 승 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	의견진술서(장애인 인적사항 기재), 동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행 장애인 배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장애인증명서, 방문입증서류	
		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현저한 보행장애 있는 고령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 인 활동 도우미, 활동지 원사 증명 서류	
		장애인 이동수단의 수리를 위한 경우: 보조기구 없 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	의견진술서, 수리업 증명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내역서, 장애인증명서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동 불가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이 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의견진술서, 차량견인내역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형버스 등 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출동정비내역서 등
		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출동내역서 등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경우	의견진술서, 음주운전 적발 내역(경찰서발급)
	긴급 상황	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긴급요청에 응해 조치를 취한 경우. 다만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긴급 현혈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 서류
	현금 수송·생계형 화물 차량	현금수송 및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 등이며, 작업 중인 경우 1.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 2. 인테리어 공사, 이사 등 작업 차량	의견진술서, 운송장, 계약서 (이사 등), 거래내역서, 공사 증빙서류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서류
	공익 목적	외교, 군사, 긴급취재, 공공기관, 긴급조사, 공공을 위한 작업·행사관련 등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선거유세기간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주민투표 관련 선거 유세 차량	의견진술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확인서 등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제8조 위법성 착오	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	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그 밖의 입증 자료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9. 8. 26, 일부개정]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9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3. ~ 2020. 2. 29.
3. 공고대상 : 64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2월 3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0 - 197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일반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엽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면허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굴착기	경남 27-2009-00** -**	박**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소곡2길 **-*	이사감	2020.1.30.
3톤미만지게차	경남 27-2007-00** -**	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주소불명	2020.1.31.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4.

거창군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위원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을 변경함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2. 5. ~ 2020. 2. 24.(20일간)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0. 2. 24.(월)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3035, FAX: 055)940-30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제출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명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전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거나,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거창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91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위임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 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위임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19. 7. 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200	201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020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2020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 근거	지원대상 단지	지원금액
2020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사업승인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사업비의 50%이내, 1)세대규모별 지원한도내
2020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0년 경과된 허가대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2,000만원한도 (최대 50%)
2020년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만원한도 (최대 50%)

2.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3. 신청단지 자격

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승인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주상복합건축물 제외)

※ 단,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해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은 제외

나.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 ~100세대 : 2,000만원한도, 101세대 ~ 300세대 : 3,000만원 301세대 ~ : 5,000천만원

- 20년 경과된 허가대상(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주상복합건축물 제외)
 - ※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또는 개방을 위한 담장 철거는 20년이 경과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신청 가능

다. 거창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 ※ 최근 3년내 사업 수혜 공동주택단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조례 제4조)

- 지원기준 : 보수(공사)비의 50%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 시설물 신규 설치는 제외

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기준 : 보수(공사)비의 50% 보조금 지원(한도 20,000천원/단지)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 단지내 도로, 주차장, 그 밖의 부지의 유지보수
 -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조경시설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 시설물 신규 설치는 제외
 - ※ 경남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병행 추진에 따라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금 지원(한도 30,000천원/단지)
- 지원내용
 - 녹색생활 및 친환경사업 : 녹색장터, 벼룩시장, 알뜰장터 등
 - 문화생활 : 북 카페, 취미교실 운영, 각종 문화강좌프로그램등
 - 자원봉사사업 : 나눔봉사, 재능기부, 자원봉사캠프운영 등
 - 육아·교육 및 기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 이해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5. 신청방법

가.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3. 6일한
- 접수장소 : 거창군청(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나.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지원신청서상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입대의 의결서, 산출근거 등)
 - ※ 관계법령 의무제출 서류 포함(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신청단지 심사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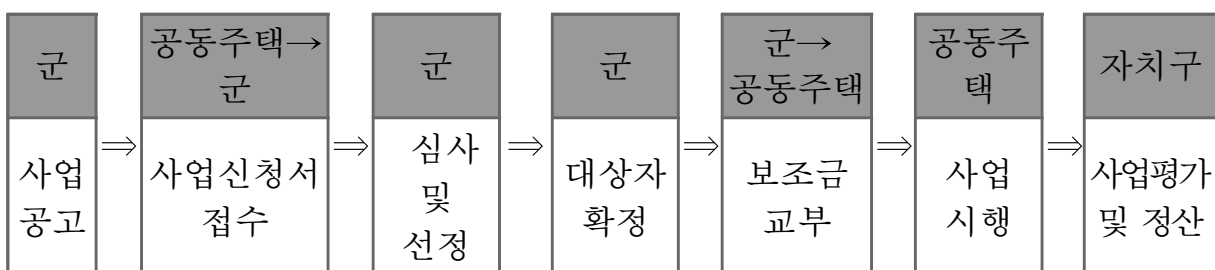
가. 심사기준 및 방법

-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기준 적합 여부
-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류 1차 검토
- 심의위원회(공동주택 및 지방보조금) 심의 후 대상단지 선정

나. 선정 결과 통보

- 대상단지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개별 통보

7.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게시되어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동주택관리 및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 공 일)	
2. 신청내용				
사 업 목 적 및 내 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 업 비				
보조신청금액				
자 기 자 본 부 담 액				
그 밖에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관리주체)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입주자대표) : (인)</p> <p>거 창 군 수 귀하</p>				
<p>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 의결서류, 사업계획서(사진포함), 사업비산출근거(설계내역서 등),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제출 서류(행위허가, 건축허가 등)</p>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대 수		관리단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업의 내용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체부담액
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2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5. 관계법령 의무제출 서류(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 ⑤ 관련사진 등

참고

우선순위 선정기준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예 산 확 보 (10점)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10점		
	미확보	0점		
사 업 내 용 (15점)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사업	20점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15점		
	공용노후시설 개보수	10점		
최근 보조사업 지원여부 (30점)	최근 10년 초과 미지원	30점		
	최근 10년 이내 지원	20점		
	최근 7년 이내 지원	15점		
	최근 5년 이내 지원	10점		
	최근 3년 이내 지원	5점		
건 물 경 과 연 수 (20점)	30년 이상	20점		
	20년 이상~30년 미만	17점		
	10년 이상~20년 미만	8점		
	10년 미만	3점		
사 업 시 급 성 (25점)	시급성(1)	25점		
	시급성(2)	20점		
	시급성(3)	10점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예 산 확 보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10점		
	자부담 협약서		5점		
	소 계		15점		
사 업 내 용	안전점검 비용		10점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관리		8점		
	부대복리시설 보수		6점		
	에너지절약설비 보수		4점		
	기타 사업		2점		
	소 계		10점		
아파트 규 모	세대수	20세대 이상	10점		
		20세대 미만	5점		
	전용 면적	40㎡미만 100%	15점		
		40~65㎡미만 50%미만	10점		
		65~85㎡이상	5점		
	소 계		25점		
경 과 연 수	30년 이상		30점		
	28년~30년 미만		20점		
	26년~28년 미만		18점		
	24년~26년 미만		14점		
	22년~24년미만		10점		
	20년~22년미만		5점		
	소 계		30점		
사업 시급성	사업시급성(1)		20점		
	사업시급성(2)		18점		
	사업시급성(3)		16점		
	사업시급성(4)		14점		
	사업시급성(5)		12점		
	사업시급성(6)		10점		
	소 계		20점		

○ 거창군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점		
	사업비 항목의 적정성 (소모성경비, 운영비, 자본적경비 포함 여부)	5점		
	자부담확보 여부	5점		
	자부담 협약서	5점		
	소 계	30점		
사업 목적 적합성	공동체 형성 및 회복 기여도	20점		
	입주민 참여도	15점		
	입주민 편익 향상도	10점		
	소 계	45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추진일정의 적정성	5점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5점		
	소 계	25점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및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제1항)
 - 제1항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나.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제2조)

- 제1항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구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삼태아 이상	비고
단태아	단축 30만원 표준·연장 40만원	단축 30만원 표준·연장 50만원	-	
쌍생아 또는 삼태아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기준(제3조)

- 이동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예산 범위에서 1일 1만원 지원

4. 입법예고기간 : 2020. 1. 30. ~ 2020. 2. 19.(20일간)

5. 제정조례 및 시행규칙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42 경남 거창군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63, 팩스 055-940-8399 또는 메일 lily91@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안 1부.
3.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 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임에도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20년 3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붙임 3]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및 세대기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이라 한다) 첫째아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 산모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할 수 있다.

1. 단태아일 경우

- 가. 첫째아 :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부지원금 단축·표준형에 따라 지원
- 나. 둘째아 :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일 경우 단축 30만원, 표준·연장 40만원 지원
- 다. 셋째아 이상 :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일 경우 단축 30만원, 표준·연장 50만원 지원

2. 다태아일 경우 :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일 경우 지원

- 가. 쌍태아 둘째아 : 40만원 지원
- 나. 쌍태아 셋째아 이상 : 50만원 지원
- 다. 삼태아 이상 : 60만원 지원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예산 범위에서 1일 1만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①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출산증명서 1부
4.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5.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5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